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2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692-273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4.04.24.(목) 이전부터 계속 거주)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0.24.(목)	2024.11.05.(화)	2024.11.06.(수)	2024.11.07.(목)	2024.11.13.(수)	2024.11.14.(목)~ 2024.11.20.(수)	2024.11.25.(월)~ 2024.11.27.(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ptcentralcity>)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24.(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4.04.24.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1.05.(화)	2024.11.06.(수)	2024.11.07.(목)	2024.11.13.(수)	2024.11.14.(목)~ 2024.11.20.(수)	2024.11.25.(월)~ 2024.11.27.(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전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참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하여 기재)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주택법」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44260호(2024.10.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동 총 1,918세대 중 일반분양 599세대
[특별공급 300세대(기관추천 60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108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526	01	045.9500	45	45.9500	23.6200	69.5700	42.1100	111.6800	23.2562	32	3	3	6	1	3	16	16	2
	02	059.9600A	59A	59.9600	22.8700	82.8300	54.9500	137.7800	27.6855	279	29	29	52	10	27	147	132	16
	03	059.9600B	59B	59.9600	23.7400	83.7000	54.9500	138.6500	27.9763	103	10	10	19	3	9	51	52	5
	04	074.9900A	74A	74.9900	24.7700	99.7600	68.7300	168.4900	33.3449	45	5	5	8	1	4	23	22	10
	05	074.9600B	74B	74.9600	26.2000	101.1600	68.7000	169.8600	33.8103	27	3	3	5	1	2	14	13	1
	06	074.9600C	74C	74.9600	26.2000	101.1600	68.7000	169.8600	33.8103	3	-	-	-	-	-	-	3	1
	07	084.9900A	84A	84.9900	27.2300	112.2200	77.8900	190.1100	37.5076	14	1	1	2	-	1	5	9	10
	08	084.9300B	84B	84.9300	27.0500	111.9800	77.8400	189.8200	37.4291	12	1	1	2	-	1	5	7	8
	09	084.1300C	84C	84.1300	28.3400	112.4700	77.1100	189.5800	37.5904	80	8	8	14	2	7	39	41	6
	10	112.9200	112	112.9200	34.1400	147.0600	103.4900	250.5500	49.1541	4	-	-	-	-	-	-	4	2
합 계										599	60	60	108	18	54	300	299	6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 ²)	045.9500	059.9600A	059.9600B	074.9900A	074.9600B	074.9600C	084.9900A	084.9300B	084.1300C	112.9200
건본주택 등 약식 표기	45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C	112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5.06.20	2025.11.20	2026.04.20	2026.09.21	2027.02.19	2027.07.20		입주지정일	
45	108동 1,2호	32	1층	2	126,324,000	236,676,000	-	363,000,000	10,000,000	8,15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27,050,000	
			2층	1	129,073,200	241,826,800	-	370,900,000	10,000,000	8,545,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37,090,000	129,815,000
			3층	2	131,822,400	246,977,600	-	378,800,000	10,000,000	8,94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132,580,000
			4층	2	134,571,600	252,128,400	-	386,700,000	10,000,000	9,335,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38,670,000	135,345,000
			5층	2	135,963,600	254,736,400	-	390,700,000	10,000,000	9,535,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39,070,000	136,745,000
			6~10층	10	137,320,800	257,279,200	-	394,600,000	10,000,000	9,73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138,110,000
			11~15층	10	138,712,800	259,887,200	-	398,600,000	10,000,000	9,93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139,510,000
59A	108동 3,5,6,7호 109동 2,4,5,6호 110동 1,2호 113동 1,2,3,5,6호 114동 1,2,4호	279	1층	8	150,405,600	281,794,400	-	432,200,000	10,000,000	11,61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151,270,000	
			2층	12	153,676,800	287,923,200	-	441,600,000	10,000,000	12,080,000	44,160,000	44,160,000	44,160,000	44,160,000	44,160,000	44,160,000	44,160,000	154,560,000	
			3층	15	156,948,000	294,052,000	-	451,000,000	10,000,000	12,55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57,850,000	
			4층	18	160,219,200	300,180,800	-	460,400,000	10,000,000	13,02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161,140,000	
			5층	18	161,854,800	303,245,200	-	465,100,000	10,000,000	13,255,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162,785,000	
			6~10층	87	163,490,400	306,309,600	-	469,800,000	10,000,000	13,49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164,430,000
			11~15층	49	165,126,000	309,374,000	-	474,500,000	10,000,000	13,725,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166,075,000
			16~20층	43	166,761,600	312,438,400	-	479,200,000	10,000,000	13,96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67,720,000
			21~25층	27	167,596,800	314,003,200	-	481,600,000	10,000,000	14,08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48,160,000	168,560,000
26층 이상	2	168,397,200	315,502,800	-	483,900,000	10,000,000	14,195,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169,365,000			
59B	108동 4호 109동 1,3호 113동 4호 114동 3호	103	1층	2	149,535,600	280,164,400	-	429,700,000	10,000,000	11,485,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150,395,000	
			2층	4	152,772,000	286,228,000	-	439,000,000	10,000,000	11,95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53,650,000	
			3층	4	156,043,200	292,356,800	-	448,400,000	10,000,000	12,42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44,840,000	156,940,000	
			4층	5	159,279,600	298,420,400	-	457,700,000	10,000,000	12,885,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45,770,000	160,195,000	
			5층	5	160,915,200	301,484,800	-	462,400,000	10,000,000	13,12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161,840,000	
			6~10층	25	162,550,800	304,549,200	-	467,100,000	10,000,000	13,355,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163,485,000

			11~15층	25	164,151,600	307,548,400	-	471,700,000	10,000,000	13,585,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47,170,000	165,095,000		
			16~20층	20	165,787,200	310,612,800	-	476,400,000	10,000,000	13,82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166,740,000		
			21~25층	10	166,622,400	312,177,600	-	478,800,000	10,000,000	13,94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47,880,000	167,580,000		
			26층 이상	3	167,422,800	313,677,200	-	481,100,000	10,000,000	14,055,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168,385,000		
74A	107동 3,4호 110동 3,5호 111동 1,2,3,5호 112동 2,3,5호	45	1층	5	181,168,800	339,431,200	-	520,600,000	10,000,000	16,03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182,210,000	
			2층	9	185,101,200	346,798,800	-	531,900,000	10,000,000	16,595,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53,190,000	186,165,000	
			3층	4	188,998,800	354,101,200	-	543,100,000	10,000,000	17,155,000	54,310,000	54,310,000	54,310,000	54,310,000	54,310,000	54,310,000	54,310,000	190,085,000	
			4층	2	192,931,200	361,468,800	-	554,400,000	10,000,000	17,72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194,040,000	
			5층	2	194,914,800	365,185,200	-	560,100,000	10,000,000	18,005,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196,035,000
			6~10층	10	196,863,600	368,836,400	-	565,700,000	10,000,000	18,285,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56,570,000	197,995,000
			11~15층	9	198,847,200	372,552,800	-	571,400,000	10,000,000	18,57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57,140,000	199,990,000
			16~20층	4	200,796,000	376,204,000	-	577,000,000	10,000,000	18,85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201,950,000
74B	112동 4호	27	1층	1	180,751,200	338,648,800	-	519,400,000	10,000,000	15,97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81,790,000	
			2층	1	184,648,800	345,951,200	-	530,600,000	10,000,000	16,53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185,710,000	
			3층	1	188,581,200	353,318,800	-	541,900,000	10,000,000	17,095,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189,665,000	
			4층	1	192,513,600	360,686,400	-	553,200,000	10,000,000	17,660,000	55,320,000	55,320,000	55,320,000	55,320,000	55,320,000	55,320,000	55,320,000	193,620,000	
			5층	1	194,497,200	364,402,800	-	558,900,000	10,000,000	17,945,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195,615,000
			6~10층	5	196,446,000	368,054,000	-	564,500,000	10,000,000	18,225,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197,575,000
			11~15층	5	198,429,600	371,770,400	-	570,200,000	10,000,000	18,51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199,570,000
			16~20층	5	200,378,400	375,421,600	-	575,800,000	10,000,000	18,79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57,580,000	201,530,000
			21~25층	5	201,352,800	377,247,200	-	578,600,000	10,000,000	18,93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57,860,000	202,510,000
			26층 이상	2	202,362,000	379,138,000	-	581,500,000	10,000,000	19,075,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58,150,000	203,525,000
74C	110동 4호 111동 4호	3	1층	1	180,751,200	338,648,800	-	519,400,000	10,000,000	15,97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81,790,000	
			2층	1	184,648,800	345,951,200	-	530,600,000	10,000,000	16,53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53,060,000	185,710,000	
			3층	1	188,581,200	353,318,800	-	541,900,000	10,000,000	17,095,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54,190,000	189,665,000	
84A	101동 2,3,4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6동 1,3,4호 107동 1,2호	14	1층	5	203,754,000	381,746,000	-	585,500,000	10,000,000	19,275,000	58,550,000	58,550,000	58,550,000	58,550,000	58,550,000	58,550,000	58,550,000	204,925,000	
			2층	9	208,173,600	390,026,400	-	598,200,000	10,000,000	19,91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209,370,000	
84B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2,3,5호 105동 1,3,4호	12	1층	4	203,301,600	380,898,400	-	584,200,000	10,000,000	19,210,000	58,420,000	58,420,000	58,420,000	58,420,000	58,420,000	58,420,000	58,420,000	204,470,000	
			2층	8	207,721,200	389,178,800	-	596,900,000	10,000,000	19,845,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59,690,000	208,915,000	
84C	101동 1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1,4호 105동 2,5호	80	1층	4	200,935,200	376,464,800	-	577,400,000	10,000,000	18,870,000	57,740,000	57,740,000	57,740,000	57,740,000	57,740,000	57,740,000	57,740,000	202,090,000	
			2층	7	205,320,000	384,680,000	-	590,000,000	10,000,000	19,5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06,500,000	
			3층	4	209,670,000	392,830,000	-	602,500,000	10,000,000	20,125,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60,250,000	210,875,000	
			4층	3	214,054,800	401,045,200	-	615,100,000	10,000,000	20,755,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215,285,000	
			5층	3	216,247,200	405,152,800	-	621,400,000	10,000,000	21,07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62,140,000	217,490,000	
			6~10층	15	218,404,800	409,195,200	-	627,600,000	10,000,000	21,38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62,760,000	219,660,000
			11~15층	15	220,597,200	413,302,800	-	633,900,000	10,000,000	21,695,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63,390,000	221,865,000
			16~20층	15	222,789,600	417,410,400	-	640,200,000	10,000,000	22,01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64,020,000	224,070,000
			21~25층	12	223,868,400	419,431,600	-	643,300,000	10,000,000	22,165,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225,155,000
26층 이상	2	224,982,000	421,518,000	-	646,500,000	10,000,000	22,325,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226,275,000			
112	102동 1호 103동 1호	4	1층	2	267,020,400	454,799,636	45,479,964	767,300,000	10,000,000	28,365,000	76,730,000	76,730,000	76,730,000	76,730,000	76,730,000	76,730,000	76,730,000	268,555,000	
			2층	2	272,797,200	464,638,909	46,463,891	783,900,000	10,000,000	29,195,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274,365,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

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45	59A	59B	74A	74B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5	2	1	-	1	-	2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	5	1	1	-	-	1	1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4	1	1	1	-	-	1	9	
	중소기업 근로자	-	6	2	1	1	-	-	1	11	
	장애인	경기도	1	4	2	1	-	-	-	1	9
		서울특별시	-	3	1	-	1	-	-	1	6
		인천광역시	-	2	1	-	-	-	-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50%)	2	15	5	3	2	1	1	4	33	
	기타지역 (50%)	1	14	5	2	1	-	-	4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6	52	19	8	5	2	2	14	10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0	3	1	1	-	-	2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3	27	9	4	2	1	1	7	54	
합 계		16	147	51	23	14	5	5	39	30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3 531 2114 699">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차량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평택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50%)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50%)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배점기준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04 544 2114 124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상한</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5%;">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td> <td></td>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1018 2136 1522"> <thead> <tr> <th data-bbox="309 1018 535 1061">단계</th> <th data-bbox="535 1018 869 1061">소득구분</th> <th data-bbox="869 1018 2136 106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1061 535 1134">1단계</td> <td data-bbox="535 1061 869 1134">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data-bbox="869 1061 2136 113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134 535 1208">2단계</td> <td data-bbox="535 1134 869 1208">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data-bbox="869 1134 2136 1208">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208 535 1281">3단계</td> <td data-bbox="535 1208 869 1281">우선공급 (35%)</td> <td data-bbox="869 1208 2136 1281">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281 535 1355">4단계</td> <td data-bbox="535 1281 869 1355">일반공급 (15%)</td> <td data-bbox="869 1281 2136 1355">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355 535 1522" rowspan="2">5단계</td> <td data-bbox="535 1355 869 1522" rowspan="2">추첨공급</td> <td data-bbox="869 1355 1160 1437">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data-bbox="1160 1355 2136 143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869 1437 1160 1522">1인 가구</td> <td data-bbox="1160 1437 2136 152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 (약식표기)</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5, 59A, 59B</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4A, 74B, 74C, 84A, 84B, 84C</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약식표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5, 59A, 59B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4A, 74B, 74C, 84A, 84B, 84C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12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구분 (약식표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5, 59A, 59B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4A, 74B, 74C, 84A, 84B, 84C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12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p>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비율</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1.05.(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일반공급	1순위	2024.11.06.(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11.07.(목)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13.(수) ~ 2024.11.22.(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1.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11.14.(목) ~ 2024.11.20.(수)	힐스테이트 팽택역센트럴시티 (경기도 팽택시 합정동 835)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됨.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봄)

■ 당첨자(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10년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 기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피부양 직계존속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기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기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지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주민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11.25.(월) ~ 2024.11.27.(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각각 50%씩 균등 납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5621-6792-619136	합정주공835재건축
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40-014-648844, 예금주: 합정주공835재건축)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③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3) 위축지역 : 3개월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5%(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시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 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7.21	입주지정일
45	17,520,000	1,752,000	1,752,000	14,016,000
59A	19,500,000	1,950,000	1,950,000	15,600,000
59B	22,610,000	2,261,000	2,261,000	18,088,000
74A	21,650,000	2,165,000	2,165,000	17,320,000
74B	22,090,000	2,209,000	2,209,000	17,672,000
74C	22,240,000	2,224,000	2,224,000	17,792,000
84A	26,120,000	2,612,000	2,612,000	20,896,000
84B	26,070,000	2,607,000	2,607,000	20,856,000
84C	28,390,000	2,839,000	2,839,000	22,712,000
112	32,580,000	3,258,000	3,258,000	26,064,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5621-6792-640636	현대건설(주)
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100%씩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649961, 예금주: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일부 유무상 옵션 반영)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 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매시에도 최초 양도인의 발코니 확장여부 계약따른 양수인은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 불가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 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 및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행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검사를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품목	설치장소	설치 개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8.20	입주지정일
45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침실1	2	3,520,000	352,000	352,000	2,816,000
		거실, 침실1, 침실2	3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2	4,120,000	412,000	412,000	3,296,000
		거실, 침실1, 침실2	3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59A,59B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침실1	2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알파룸)	4	7,260,000	726,000	726,000	5,808,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2	4,450,000	445,000	445,000	3,56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알파룸)	4	8,460,000	846,000	846,000	6,768,000

74A,74B, 74C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침실1	2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7,370,000	737,000	737,000	5,896,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2	4,560,000	456,000	456,000	3,648,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8,570,000	857,000	857,000	6,856,000
84A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0,890,000	1,089,000	1,089,000	8,712,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2,690,000	1,269,000	1,269,000	10,152,000
84A 소셜다이닝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850,000	1,085,000	1,085,000	8,680,000
84B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850,000	1,085,000	1,085,000	8,680,000
84C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0,890,000	1,089,000	1,089,000	8,712,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2,690,000	1,269,000	1,269,000	10,152,000
112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1,330,000	1,133,000	1,133,000	9,064,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7,060,000	706,000	706,000	5,64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3,130,000	1,313,000	1,313,000	10,504,000
112 소셜다이닝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거실, 주방, 침실1	3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7,060,000	706,000	706,000	5,648,000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180,000	1,118,000	1,118,000	8,944,000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냉매매립배관 2개소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이 기본 제공되며 평형별 시설물(냉매배관, 배수배관, 콘센트 등)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에어컨 구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2개소(콘센트 포함)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시 홈넷, 온도조절기와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등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옵션 선택한 실내기의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LG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품명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5.08.20	입주지정일	
기능성오븐	LG전자 / MZ385EBT1	전 타입	400,000	40,000	40,000	32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 DW60A5055BB	전 타입	850,000	85,000	85,000	680,000	중복선택 불가
	LG / DIE6PT	전 타입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3구 인덕션	LG / BEI3WWQLBI	전 타입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빌트인 냉장/냉동/김치 + 키큰장 (45타입은 김치냉장고 없음)	LG / 오브제(미스트베이지)	45	4,140,000	414,000	414,000	3,312,000	중복선택 불가
		59A,59B,74A,74B,74C, 84A,84B,84C,112	6,080,000	608,000	608,000	4,864,000	
	삼성 / 비스포크(코타화이트)	45	3,940,000	394,000	394,000	3,152,000	
		59A,59B,74A,74B,74C, 84A,84B,84C,112	5,960,000	596,000	596,000	4,768,000	
H BELL	-	전 타입	210,000	21,000	21,000	168,000	
13인치 월패드	-	전 타입	120,000	12,000	12,000	96,000	

■ 평면선택 및 마감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5.08.20	입주지정일		
바닥	바닥마감 선택 1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포세린타일	59A, 59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중복선택 불가
		각 침실 : 헤링본 강마루	74A, 74B, 74C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84A, 84B, 84C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112	4,150,000	415,000	415,000	3,320,000	
	바닥마감 선택 2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 포세린타일 각 침실 : 광폭 강마루	59A, 59B	2,110,000	211,000	211,000	1,688,000	
			74A, 74B, 74C	2,530,000	253,000	253,000	2,024,000	
			84A, 84B, 84C	2,880,000	288,000	288,000	2,304,000	
			112	3,490,000	349,000	349,000	2,792,000	
욕실	욕실1,2 고급 특화	유럽산 벽타일 + 외산 바닥타일 + 세면대 고급화 + 수전/도기	59A, 59B	11,160,000	1,116,000	1,116,000	8,928,000	욕조 혹은 샤워부스 무상선택제
			74A, 74B, 74C, 84A, 84B, 84C	11,240,000	1,124,000	1,124,000	8,992,000	
			112	11,440,000	1,144,000	1,144,000	9,152,000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형)	45	2,770,000	277,000	277,000	2,216,000	중복선택 불가
			59B,74A,74B,74C, 84A,84B,84C,112	2,690,000	269,000	269,000	2,152,000	
		여닫이 도어(수동형)	59A	2,690,000	269,000	269,000	2,152,000	
	현관 미세먼지 특화	현관중문 + 의류미세먼지 클리너 + 천장 에어샤워	59A,59B,74A,74B,74C, 84A,84B,84C,112	3,770,000	377,000	377,000	3,016,000	
				59A,59B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74A,74B,74C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현관 마감 고급화	도어마감 업그레이드 + 신발장하부조명 + 벽/천정 시트판넬	84A,84B,84C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거실	거실 마감 고급화 + 거실 아트월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소파뒷벽 세라믹 타일 + 복도 및 주방벽 시트판넬	112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중복선택 불가
			59A	4,630,000	463,000	463,000	3,704,000	
			59B	5,680,000	568,000	568,000	4,544,000	
			74A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74B,74C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A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84B	6,430,000	643,000	643,000	5,144,000	
	84C	9,920,000	992,000	992,000	7,936,000			
	112	7,320,000	732,000	732,000	5,856,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45	1,790,000	179,000	179,000	1,432,000	
			59A,59B	2,020,000	202,000	202,000	1,616,000	
			74A,74B,74C	2,130,000	213,000	213,000	1,704,000	
			84A,84C,84B	2,220,000	222,000	222,000	1,776,000	
	주방	주방마감 고급화	주방 상판 + 벽 세라믹 타일 + 상하부장 라인조명 + 유리 상부장 + 공간 내 벽체 시트판넬 + 주방 수전 + 간접등	112	2,390,000	239,000	239,000	
59A				9,240,000	924,000	924,000	7,392,000	
59B				7,870,000	787,000	787,000	6,296,000	
74A				8,080,000	808,000	808,000	6,464,000	
74B				9,380,000	938,000	938,000	7,504,000	
74C				10,750,000	1,075,000	1,075,000	8,600,000	
주방마감 고급화		주방 상판 + 벽 세라믹 타일 + 상하부장 라인조명 + 유리 상부장 + 공간 내 벽체 시트판넬 + 주방 수전 + 간접등	84A	8,370,000	837,000	837,000	6,696,000	
			84B	9,540,000	954,000	954,000	7,632,000	
			112	10,930,000	1,093,000	1,093,000	8,744,000	
주방마감 고급화		주방 상판 + 벽 세라믹 타일 + 상하부장 라인조명 + 유리 상부장 + 공간 내 벽체 시트판넬 + 주방 수전 + 장식장	84C	7,290,000	729,000	729,000	5,832,000	
			주방공간 특화	와이드 다이닝	74B, 74C	2,900,000	290,000	290,000
84C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84A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C 주방공간 특화 시 빌트인 냉장/냉동/김치 + 키친장 선택 불가
112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침실1	붙박이장	슬라이딩 도어	45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59A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59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74A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84A,84B,84C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112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74B,74C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드레스룸 마감 고급화	벽판넬 + 조명선반 + 유리도어 + 착색 포스트	84C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74A, 74B, 74C 침실공간특화 중복 선택 불가
			74B, 74C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84A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74A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84B 소셜다이닝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112 주방공간 특화 중복 선택 불가
			112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84B 84B 침실공간특화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침실 공간 특화	3연동 슬라이딩+일반가구장(팬트리 외)	59A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중복선택 불가
			59B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74A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84A, 84B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84C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112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침실3	반침장	오픈장 + 특수 PET	59A,59B,74B,74C, 84A,84B,84C,112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침실2	반침장	오픈장 + 특수 PET	7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도어락	항균 도어락	안방 : 모티스 / 일반 : 레버형	45	110,000	11,000	11,000	88,000	
			59A,59B	170,000	17,000	17,000	136,000	
			74,74B,74C	200,000	20,000	20,000	160,000	
			84A,84B,84C	240,000	24,000	24,000	192,000	
			112	220,000	22,000	22,000	176,000	
실외 기실	실외기실 자동루버	-	전 타입	930,000	93,000	93,000	744,000	

■ 조명특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5.08.20	입주지정일	
조명특화	안방특화조명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조명	45	3,570,000	357,000	357,000	2,856,000
		59A, 59B	5,260,000	526,000	526,000	4,208,000
	안방특화조명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조명 + 주방특화조명 + 식탁 펜던트	59A 침실공간특화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74A, 74B, 74C	5,950,000	595,000	595,000	4,760,000
		84A	6,140,000	614,000	614,000	4,912,000
		84B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84C	6,550,000	655,000	655,000	5,240,000
		112	5,990,000	599,000	599,000	4,792,000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5621-6792-661630	현대건설(주)
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650012, 예금주: 현대건설(주)]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에는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평면 선택형의 경우 조건부 선택 불가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옵션 선택시 일부 냉장고 상부장에 SMPS함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납이 불가합니다.
- 안방 특화조명,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직하 조명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에어샤워시스템의 장비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디자인, 위치는 견본주택 대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기기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먼지 유입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

	<p>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구입처-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설계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비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컬러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

	<p>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배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하부세대 지붕 상부는 공용공간으로 특정세대에서 점용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 상부는 공용공간으로 특정세대에서 점용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은 특정 행위 및 시설(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제한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문열림방향은 본공사 시 인허가권자 협의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음벽의 디자인은 본 시공시 확정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로의 소음, 진동 및 열 전달로 인한 생활권 침해 및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은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p>주변현황 / 단지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 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경부선과 인접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완충녹지, 학교, 공공청사,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완충녹지, 학교, 공원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에서 어린이공원 및 학교로의 연결통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중 변경 및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은 합정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중학생은 평택중학교 내 기존 중학교(동삭중, 배다리중, 비전중, 세교중, 용이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및 소사별2중(2025. 3. 개교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컴퓨터 전산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교(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개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2개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인 평택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 및 램프,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 대지경계선에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보고서」에 따라 약 390m 구간에 9m 높이의 영구방음벽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한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용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본 공사시 결정됩니다. 												
<p>아파트주동 / 공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풍/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상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로 인한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로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내 모형 및 CG상의 커튼월록 색상, 디자인, 그리드 및 규모등은 실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커튼월록에 접한면에 창호가 있는 세대의 경우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 영역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사용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며, 또한, 경형주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일반 주차대수, 친환경주차, 조업주차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114동 주동 지붕층 및 옥탑층에는 관련 인허가 의견에 따라 단지의 북측 일조권 침해 해결장치(태양반사판)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눈부심,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차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유효높이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02 1241 2116 1380"> <thead> <tr> <th>구 분</th> <th>주차장 차로의 높이</th> <th>주차장 출입구의 높이</th> </tr> </thead> <tbody> <tr> <td>지하 1층</td> <td>2.7m (일부구간 2.3m이상, 주차공간은 2.1m 이상)</td> <td>2.7m</td> </tr> <tr> <td>지하 2층</td> <td>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td> <td></td> </tr> <tr> <td>지하 3층</td> <td>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조별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할 예정입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일부구간 2.3m이상,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일부구간 2.3m이상,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환기 및 냉난방설비(장비, 덕트 등)는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개폐방식 및 개폐창호 규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예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계장치 설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 102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14동 - 지하1층: 제연환룸(102동, 107동, 111동) - 지하2층: PIT(102동, 107동, 111동) - 지하3층: PIT(102동, 107동, 111동) ②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 102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14동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덕트,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 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및 주차장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며, 입주자는 본 계약에 따라 CCTV 설치·운영에 동의합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덕트,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의 위치는 인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 될 수 있습니다. • 국기봉은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으며 각 동별 입구에 공동 국기봉이 설치됩니다.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우수 등의 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및 개소가 결정됩니다.
- 단위세대 환기구는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결정됩니다.
- 일부 평형은 오수, 배수, 우수배관이 층상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펜트하우스 등) 인근에 오배수/우수용/가스 배관,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간 제약,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장 포함) 및 반침장 하부에는 마루 등의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내부에는 운수분배기 및 배관/배선 등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가구 및 마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면대 사용시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바라며 세면대 사용 후 가구 등 마감재에 묻어있는 물 닦기 등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면대 아래 하부장에는 세면기 배수(트랩 등), 급배수 배관/밸브, 점검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으로 독립형 후드 설치를 선택한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해당 세대는 향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시공해야 함을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에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가 설치되며 수납공간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에어샤워시스템의 장비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디자인, 위치는 견본주택 대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에어샤워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기기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먼지 유입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부 평형의 오수, 배수, 우수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하부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등에 통기용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테라스나 발코니에 오배수/우수용/가스 배관,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간 제약,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추가 설치되는 난간은 철제난간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은 방화문으로 계획되며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됩니다.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출입문의 열림 방향은 관련 인허가권자 협의하에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발코니(다용도실) 내부로 열리도록 변경 될 수 있으며 방화문의 도어 프레임, 하부씰 등의 상세한 시공 방법 및 내용은 본 공사시 확정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 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정)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정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 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 오작동 방지를 위한 방풍실 형식이 불가피한 일부 주동은 다수의 출입문 계획으로 보행의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비용으로 교체해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이 개별 또는 통합형으로 시공되며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원패스 및 스마트폰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판에 가스인입용 구멍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에는 일부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상이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옥외에 탈출형 대피시설(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 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은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59A, 74A 침실1 분합창의 높이는 다른 타입보다 작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 주방창호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전동식 자동루버 수동개폐용 손잡이는, 제품의 특성상 그릴 오른쪽에 위치하여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실 루버가 열린 상태여야 작동이 가능하므로,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 열림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본 공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 - 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일부구간 2.3m이상,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지하 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 부문 설계 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 부문 설계 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인증 또는 최저소비효율 만족 전동기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인증 또는 KS규격 기준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 부문 설계 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장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설치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2. 신청자 : 팽택합정주공835단지세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4. 성능등급</p> <p>가. 소음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향소리를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소리를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상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기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현상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률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20. 연개편 녹지율 조성</td><td>-</td></tr> <tr><td>21. 자연지형 녹지율</td><td>★</td></tr> <tr><td>22. 생태연착</td><td>★</td></tr> <tr><td>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td><td>★</td></tr> <tr><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정의 적용</td><td>★★</td></tr> <tr><td>25. 자연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차내·외 보행성 현상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선거주자향 도 차선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계획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자유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종내트유크 종합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장치 콘텐츠</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div>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10월 2일</p> <div style="text-align: right;"> 시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div>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소리를 차단성능	★★★★	2. 중앙소리를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현상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개편 녹지율 조성	-	21. 자연지형 녹지율	★	22. 생태연착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성 현상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선거주자향 도 차선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계획일 제공	★★★★	7. 사용자 자유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종내트유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장치 콘텐츠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p>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건축주 : 팽택합정주공835단지세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td> <td>인증번호 : G-SEED-P-2024-0880-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4. 10. 02. -</td> </tr> <tr> <td>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면적연적325,034.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td> <td>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10월 2일</p> <div style="text-align: right;"> 시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div> <p>■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건축주 : 팽택합정주공835단지세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증번호 : G-SEED-P-2024-0880-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4. 10. 02. -	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면적연적325,034.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준공연도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td> <td>인증번호 : 24-주-에-1-0146 평가자 : 김지혜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준공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시공중인 또는 시공중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 <th colspan="4">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41.9</td> <td>54.9</td> <td>42.0</td> <td>9.3</td> </tr> <tr> <td>교방</td> <td>26.7</td> <td>26.9</td> <td>20.5</td> <td>6.4</td> </tr> <tr> <td>조명</td> <td>11.7</td> <td>11.7</td> <td>32.2</td> <td>5.5</td> </tr> <tr> <td>환기</td> <td></td> <td>3.6</td> <td>10.0</td> <td>1.7</td> </tr> <tr> <td>합계</td> <td>84.3</td> <td>109.1</td> <td>112.7</td> <td>22.9</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교방,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설치된 냉방, 난방, 교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p> <p>■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1설치량 [V] 설치되지 않았던 건축물입니다.</p> <p>※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09월 20일</p> <div style="text-align: righ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준공연도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	인증번호 : 24-주-에-1-0146 평가자 : 김지혜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준공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시공중인 또는 시공중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9	54.9	42.0	9.3	교방	26.7	26.9	20.5	6.4	조명	11.7	11.7	32.2	5.5	환기		3.6	10.0	1.7	합계	84.3	109.1	112.7	22.9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소리를 차단성능	★★★★																																																																																																																																						
2. 중앙소리를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현상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개편 녹지율 조성	-																																																																																																																																						
21. 자연지형 녹지율	★																																																																																																																																						
22. 생태연착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성 현상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선거주자향 도 차선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계획일 제공	★★★★																																																																																																																																						
7. 사용자 자유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종내트유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장치 콘텐츠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건축주 : 팽택합정주공835단지세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증번호 : G-SEED-P-2024-0880-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4. 10. 02. -																																																																																																																																						
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면적연적325,034.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준공연도 : 2027년 7월 1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3층/지상 20~35층(14개동) 연면적 : 330792.5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BNA유동민건축	인증번호 : 24-주-에-1-0146 평가자 : 김지혜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준공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시공중인 또는 시공중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9	54.9	42.0	9.3																																																																																																																																			
교방	26.7	26.9	20.5	6.4																																																																																																																																			
조명	11.7	11.7	32.2	5.5																																																																																																																																			
환기		3.6	10.0	1.7																																																																																																																																			
합계	84.3	109.1	112.7	22.9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유의 사항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4300호	₩196,361,42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에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정보통신·소방 감리
상호	(주)유탑엔지니어링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성우엔지니어링
금액	₩6,825,247,000	₩1,090,294,770	₩1,707,2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현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31371-0005990	110111-0007909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57, 2층 (합정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 견본주택 안내

구분	약도	비고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h3>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도</h3> <p>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31-692-2731 ■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ptcentralcity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